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주택국)

김 포 시

목 차

▣ 도시주택국

1. 도시계획과	3
2. 주택과	27
3. 건축과	67
4. 토지정보과	111
5. 종합허가과	163

도시주택국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도시계획과
요구액	10천원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	10	10	-	10	-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0	10	10	-	10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연 30회)		
사업목적	매월 정기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73조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①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960	41,900	41,900	0	0	0	42,800	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960	41,900	41,900				42,800	9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800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15명*5회 · 도시계획위원회(1분과) 참석수당 : 100,000원*9명*23회 ·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13명*2회 · 위원회 속기료 : 200,000원*2시간*30회	= 7,500 = 20,700 = 2,600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속기료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위원회 평균 참석인원 및 개최 횟수를 조정 반영하여 산출함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본회의 월 1회, 1분과 월 2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월 1회) ※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위원회 개최 32회(본회의 10회, 1분과 20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2회)
2024	· 위원회 개최 23회(본회의 5회, 1분과 16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2회)
2025	· 위원회 개최 19회(본회의 4회, 1분과 15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780	31,110	-	4,670	
2024	26,960	23,310	-	3,650	
2025	41,900	26,435	-	15,46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연구환	담당자	행정7급 이미연 행정8급 원지은	전화	2357 2536
-----	-------	------------	-----	----------------------	----	--------------

도시계획 수립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해당없음
사업규모	도시계획 자문료, 자료 제본 및 도서구입, 업무배상공제 가입 등			
사업목적	도시계획 업무에 필요한 자문료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송 관련 보험료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73조
		제73조(수당 및 여비) ①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80	8,880	8,880	0	0	0	7,000	-1,8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080	8,880	8,880				7,000	-1,8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도시계획 수립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계획 관련 자문료 : 100,000원*4명*5회 · 도시계획 관련 도서 구입 · 도시계획 관련 자료제본 및 물품 구입 : 100,000원*36회	= = =	2,000 200 3,600
	201-02 공공운영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소송 관련 보험료 : 171,428원*7명	=	1,2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계획 관련 업무 수행 시 자문, 자료제본, 도면·도서 등의 제작 및 구입 필요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재사항 등재 관련 과실사항 발생 대비 업무배상 보험료 납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연례 반복 사업, 도시계획 관련 자문 건수 감소 예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문, 자료제본, 도면·도서 등의 제작(수시)
- 2026. 3.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3.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집행금액 : 13,015천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집행금액 : 1,009천원) · 자료제본, 도서 구입 등(집행금액 : 2,285천원)
2024	· 2024. 3.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집행금액 : 1,009천원) · 자료제본, 도서 구입 등(집행금액 : 3,088천원)
2025	· 2025. 1. : 신문게재 광고료 지급(집행금액 : 6,000천원) · 2025. 3.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배상공제 회비 납부(집행금액 : 1,009천원) · 자료제본, 도서 구입 등(집행금액 : 56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309	16,309	-	-	
2024	11,080	4,097	6,000	983	
2025	14,880	7,569	-	7,3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7급 조완희	전화	2440
-----	-------	------------	-----	----------	----	------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관리대장 작성, 실효시설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사업목적	실효대상 장기미집행시설 고시, 장기미집행시설 조사 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48조 제2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제3항 -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622	45,000	45,000	0	0	0	4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622	45,000	45,000				45,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	
김포시 장기미집행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국토개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표준품셈(계획면적16만㎡)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적용)*노무비]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10% · 부가가치세 10% 		
		=	17,700	
		=	19,470	
		=	3,710	
		=	4,120	

□ 예산요구 사유

- 실효시기가 도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필요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분석, 실효 검토, 관리대장 작성, 지형도면 고시 등 도시계획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 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과업 착수
- 2026. 2. : 과업수행(현장조사, 지형도면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 12. : 시의회 보고 및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3.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착수 · 2023. 12.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준공(집행금액 : 48,666천원)
2024	· 2024. 3.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착수 · 2024. 12.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준공(집행금액 : 48,622천원)
2025	· 2025. 4.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착수 · 2025. 5. 김포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용역 선금지급(집행금액 : 27,7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666	48,666	-	-	
2024	48,622	48,622	-	-	
2025	45,000	27,750	-	17,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7급 오권혁	전화	2441
-----	-------	------------	-----	----------	----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276.6km ²		
사업목적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운영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과 유지관리(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234	21,780	21,780	0	0	0	21,78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234	21,780	21,780				21,78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780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201-02 공공운영비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비 : 1,815,000원*12월 ※ GIS엔진,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관리 ※ 유지보수 대가 산정(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 21,78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 유지관리의 필요성
 - 우리 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지원처리 등 표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체계 마련 필요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현황
 - UPIS 표준시스템 Ver 8.0운영중
 - HW(APP서버/DB서버) 및 SW[GIS엔진(GeoNURIS Suite) / DBMS Oracle]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 갱신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용역업체 선정 및 과업 착수
- 2026. 2. : 과업 수행(매달 정기점검 실시)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3.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 · 2023. 12.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준공(집행금액: 16,560천원)
2024	· 2024. 1.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 · 2024. 12.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준공(집행금액: 18,234천원)
2025	· 2025. 2. :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착수(집행금액: 18,494천원)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60	16,560	-	-	
2024	18,234	18,234	-	-	
2025	21,780	18,494	-	3,28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임예빈	전화	2325
-----	-------	------------	-----	----------	----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정비 용역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9개 구역(면적 = 534,945㎡)		
사업목적	취락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지 등) 재정비 추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610,000	6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610,000	61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10,000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용역	401-01 시설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53.5만㎡/10만㎡) ^{0.6} *환산계수(2.7)*기준 인건비(기술사 특급·고급 인건비 합산 = 203,845)	=	330,229
		·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 환경((53.5만㎡/10만㎡) ^{0.2} *기준 인건비*단가) + 교통((53.5만㎡/10만㎡) ^{0.6} *기준 인건비*단가) + 경관((53.5만㎡/10만㎡) ^{0.6} *기준 인건비*단가]	=	184,222
		· 지형도면 고시 계획	=	37,208
		- 기준 인건비*단가*보정계수(53.5만㎡/10만㎡) ^{1.0} *환산계수(1.0)	=	2,920
· 손해배상공제료	=	2,920		
- 순계약금액*[기본요율 + (가산요율*표준 사업 기간 초과일수/365)]	=	55,421		
· 부가가치세	=			
- 554,210,715*10%	=			

□ 예산요구 사유

-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의 적기 정비와 사전 조치, 지자체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장기미집행된 실효 대상 시설의 적기 정비와 제도적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
- 도시계획시설 실효, 토지 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해소
 -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토지를 정비하지 않을 시, 지구단위계획 용도 미지정으로 인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제한이 발생하므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정 여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방안 마련
-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또는 실효되는 토지의 인허가 제한사항을 조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배치 및 조성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 정합성 및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용역 집행을 위한 심사 등 절차 이행
 - 2026. 2. : 용역 발주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26. 6. : 계약 체결
 - 2026. 7. : 용역 착수
 - 2026. 9.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6. 12. : 용역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A = 534,945㎡	본예산 요구액 (천원)	610,000																																		
부기명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정비 용역	사업위치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9개 구역)																																				
위치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역</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534,945</td> </tr> <tr> <td>1</td> <td>안동</td> <td>59,542</td> </tr> <tr> <td>2</td> <td>풍곡</td> <td>32,440</td> </tr> <tr> <td>3</td> <td>장곡·황색</td> <td>165,070</td> </tr> <tr> <td>4</td> <td>고란태</td> <td>38,871</td> </tr> <tr> <td>5</td> <td>이화</td> <td>37,215</td> </tr> <tr> <td>6</td> <td>신촌</td> <td>47,005</td> </tr> <tr> <td>7</td> <td>영사정</td> <td>30,084</td> </tr> <tr> <td>8</td> <td>전호</td> <td>98,384</td> </tr> <tr> <td>9</td> <td>평리</td> <td>26,334</td> </tr> </tbody> </table>		구분	구역	면적(㎡)	계		534,945	1	안동	59,542	2	풍곡	32,440	3	장곡·황색	165,070	4	고란태	38,871	5	이화	37,215	6	신촌	47,005	7	영사정	30,084	8	전호	98,384	9	평리	26,334
					구분	구역	면적(㎡)																																
계		534,945																																					
1	안동	59,542																																					
2	풍곡	32,440																																					
3	장곡·황색	165,070																																					
4	고란태	38,871																																					
5	이화	37,215																																					
6	신촌	47,005																																					
7	영사정	30,084																																					
8	전호	98,384																																					
9	평리	26,33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9급 전류민	전화	2442
-----	-------	------------	-----	----------	----	------

지적도 정비에 따른 연속주제도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6. 3. ~ 2027. 3.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체 연속주제도 211개 레이어(3,665도곽)		
사업목적	연속지적도와 주제도 불부합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업무 능력 향상과 신뢰성 있는 민원 서비스 달성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토지이용 규제법	제12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7조의2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관리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484,928	484,9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484,928	484,9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4,928	
지적도 정비에 따른 연속주제도 정비 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용도지역지구 총 3,665도곽(지적도 구획) 도면작성		
		• 동지역		
		- 138,000원(토지지역) * 300 도곽	=	41,400
		- 95,000원(수치지역) * 528 도곽	=	50,160
		- 172,000원(임야지역) * 14 도곽	=	2,408
		• 읍면지역		
		- 135,000원(토지지역) * 1,821 도곽	=	245,835
		- 93,000원(수치지역) * 900 도곽	=	83,700
- 170,000원(임야지역) * 102 도곽	=	17,340		
• 부가가치세 10%	=	44,08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예산요구 사유

- (토지정보과 소관)2025년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및 2026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운 연속지적도와 기존 연속주제도(용도지역·지구선 등) 간 불일치 발생-정합성 확보 필요
- 연속지적도와 연속주제도 간 이격으로 인허가 지연·착오, 부동산 경계·면적 분쟁 등 도시계획 지형도면 관련 민원 발생 우려
- 2025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 (총 면적 276.6km², 3,665도곽, 지형도면 등 연속주제도 211종)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과 연계된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예정)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추진예정)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용역 집행을 위한 심사 등 절차 이행
 - 2026. 2. :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26. 3. : 용역 착수 및 연속주제도 정비 및 검증 실시
 - 2027. 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및 용역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임예빈	전화	2325
-----	-------	------------	-----	----------	----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규모	16.95km ²		
사업목적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경계표석·안내판 설치·유지비, 사무관리비(현수막, 인쇄비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금액 등은 제30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794	5,794	5,794	0	0	0	6,094	300	
국비	5,794	5,794	5,794				6,094	3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94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201-01 사무관리비	· 현수막 제작(6,000*700) : 55,000원*20EA	= 1,100	
		· 안내문 및 팜플렛 제작(A4) : 100원*7,000EA	= 700	
		· 안내판 및 경계표석 정비 : 220,000원*5EA	= 1,100	
		· 피복(작업화, 방한용품 등) 구입 : 250,000원*4EA	= 1,000	
		· 단속차량 유지 및 단속 장비 구매 : 250,000원*4EA	= 1,000	
		· 복사용지(A4) 구입 : 25,000원*20EA	= 500	
		· 복사용지(A3) 구입 : 50,000원*10EA	= 500	
		· 사무용품 구입 : 194,000원	= 194	

□ 예산요구 사유

- 불법행위 점검 및 경계표석·안내판 정비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비 보전 및 국비(관리비) 증가(30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의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1분기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추진(현수막, 팸플렛, 안내문 제작 등)
- 2026. 5. :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경계표석, 안내판) 유지 보수
- 2026. 6. : 2분기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추진(현수막, 팸플렛, 안내문 제작 등)
- 2026. 8. : 단속 차량 정비 및 단속 장비 구매
- 2026. 9. : 3분기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추진(현수막, 팸플렛, 안내문 제작 등)
- 2026. 10. :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경계표석, 안내판) 유지 보수 및 사무용품 구입
- 2026. 11. : 4분기 불법행위 사전 예방활동 추진(현수막, 팸플렛, 안내문 제작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복사용지, 토너, 현수막 등 관리비 지출
2024	· 복사용지, 토너, 현수막 등 관리비 지출
2025	· 복사용지, 토너, 현수막 등 관리비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94	5,794	-	-	
2024	5,794	5,794	-	-	
2025	5,794	3,646	-	2,14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장 문정수	담당자	시설8급 엄성준	전화	2398
-----	-------	--------------	-----	----------	----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개설공사(자체)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380-21번지 일원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L=474m, B=8~10m)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00	1,734,050	1,734,050	0	0	0	150,000	-1,584,050	
국비	136,000	867,025	867,025					-867,025	
도비		0						0	
시비	34,000	867,025	867,025				150,000	-717,02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자체)	401-01 시설비	· 관급자재	=	100,000
		- 미끄럼방지 760㎡, 아스콘 480톤, 보도블럭 500㎡	=	50,000
		· 보상비(재결 3건, 행정소송 3건 등)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개설공사 관급자재 단가 상승 및 이의재결·행정소송 등 추가 보상에 따른 사업비 확보 필요

□ 예산 증감 사유

- 당초 사업계획 대비 단가상승 및 이의재결·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3. ~ 2022. 10. : [1구간] 실시설계, 보상 및 공사
- 2022. 11. ~ 2023. 8. : [2구간] 실시설계용역
- 2023. 9. ~ 2024. 12. : [2구간]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 2025. 1. ~ 2025. 8. : [2구간] 수용재결 및 공탁
- 2025. 6. : [2구간] 공사 착공
- 2026. 12. : [2구간]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685,000	3,535,000	150,000	150,000	0	0	
공정별	설계비	30,000	30,000	0			
	보상비	2,700,000	2,650,000	50,000	50,000		
	공사비	955,000	855,000	100,000	1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협의
2024	·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2025	·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수용재결 및 공탁 ·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공사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46,075	315,952	1,530,123	-	
2024	1,700,123	1,086,161	613,962	-	
2025	2,348,012	1,727,879	-	620,13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L=474m, B=8~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5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곡도시계획도로(2구간) 개설공사[자체]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380-21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장	문정수	담당자	시설6급 나종민	전화	2451
-----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주택과



(주택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주택과
요구액	27,513,28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0	12	10	2	10	-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60	12	10	2	10	-2	부서 계좌 상·하반기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50	50	50	-	50	-	
기타수입/그외수입 ◎행동강령위반 환수금	50	50	50	-	50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발생 시 환수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0,700	112,000	52,000	60,000	95,000	-17,000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700	5,000	2,000	3,000	5,000	0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기타과태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	100,000	30,000	30,000	-	30,0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기타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00	20,000	20,000	-	20,000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주거급여 환수액	-	57,000	-	57,000	40,000	-17,000	3년 평균 환수액으로 예산 편성. (환수액 2023년 32,687천원, 2024년 32,519천원, 2025년 57,000천원) ※ '25.2월 주거급여 환수액 세입과목 변경(그외수입→부정이익환수금)

○ 보조금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국고보조금등	22,085,900	24,010,700	23,870,900	139,800	25,107,059	1,096,359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주거급여	21,703,500	23,383,000	23,383,000	-	24,238,517	855,517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인상에 따른 대상자 확대,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주거급여 예산 증액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장애인주택개조사업	11,400	11,400	11,400	-	11,400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6,000	8,000	6,000	2,000	8,000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거주지로 이전 지원 강화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청년월세 지원	330,000	515,500	367,000	148,500	762,642	247,142	창년월세 지원기간 확대(12개월 → 24개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변경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전세보증금면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5,000	42,800	53,500	-10,700	36,500	-6,300	2026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일괄 감액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50,000	50,000	-	50,000	-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행사를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필요
시·도비 보조금 등	1,874,350	2,164,568	2,122,628	41,940	2,311,161	146,593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주거급여	1,688,050	1,818,678	1,818,678	-	1,885,218	66,540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인상에 따른 대상자 확대,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주거급여 예산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800	2,400	1,800	600	2,400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거주지로 이전 지원 강화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청년월세 지원	99,000	154,650	110,100	44,550	228,793	74,143	창년월세 지원기간 확대(12개월 → 24개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변경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전세보증금면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0,500	12,840	16,050	-3,210	10,950	-1,890	2026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일괄 감액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20,000	20,000	-	20,000	-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행사를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필요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노후 승강기)	36,000	72,000	72,000	-	108,000	36,000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에 따른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공용시설)	24,000	12,000	12,000	-	24,000	12,000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에 따른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안전관련시설)	-	52,500	52,500	-	15,000	-37,500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에 따른 감액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경비실 에어컨)	-	-	-	-	1,800	1,800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에 따른 증액 ('26년 신규사업)
시·도비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5,000	19,500	19,500	-	15,000	-4,500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에 따른 감액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공모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원</td> <td colsp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택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300,000	350,000	350,000	-	-	-	350,000	-	
시비	300,000	350,000	350,000	-	-	-	350,000	-	
자부담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50,000	350,000	-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 50,000천원*6단지 =	300,000	300,000	-	
		· 모범상생 우수단지(500세대 이상) : 30,000천원*1단지 =	30,000	30,000	-	
		· 모범상생 우수단지(500세대 미만) : 20,000천원*1단지 =	20,000	20,000	-	

□ 예산요구 사유

- 아파트 비중 72.9%로 도내 31개 시군 중 최상위(3위) 및 콤팩트시티 조성 등 지속 증가 예정
※ 근거 : 2024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24.12월 발표)
- 70만 도시를 대비하여 정주환경 개선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노후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전기·승강기·상하수도·CCTV·오배수관 등 공용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사고 위험 및 생활 불편이 증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마송1차현대아파트 외 18개 단지 · 사업내용 : 도로 아스콘 및 지하저수조 부분보수, CCTV 개선, 승강기 안전부품 개선, 외벽 균열보수 등
2024	· 보조사업자 : 풍년마을영풍아파트 외 10개 단지 · 사업내용 : 승강기 교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CCTV 교체 증설 등
2025	· 보조사업자 : 마송2차현대아파트 외 9개 단지 · 사업내용 : 경비초소 부동침하 복구, 노후 피뢰침 교체, 지하주차장 누수 및 균열보수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450,000	450,000	-	450,000	450,000	-	-	-	-	
2024	300,000	300,000	-	300,000	300,000	-	-	-	-	
2025	350,000	350,000	-	350,000	350,000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단지 중 공모하여 사업규모 결정		
사업목적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공용시설, 안전관련시설의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도비30%, 시비7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200,000	455,000	455,000	-	-	-	496,000	41,000	
도비	60,000	136,500	136,500	-	-	-	148,800	12,300	
시비	140,000	318,500	318,500	-	-	-	347,200	28,700	
자부담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96,000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의무관리대상 (승강기) : 120,000천원*3단지	= 360,000	
		· 비의무관리대상 (공용시설) : 40,000천원*2단지	= 80,000	
		· 의무+비의무 (안전관련시설) : 25,000천원*2단지	= 50,000	
		· 의무+비의무 (경비실 에어컨) : 600천원*10개소	= 6,000	

□ 예산요구 사유

- 준공 후 21년이 경과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시 8대 안전부품이 반드시 설치·교체되어 있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재검사합격 시까지)로 단지 운영과 안전에 영향이 큼.
- 승강기 교체·수선 비용이 높아 유지관리 부담이 큼
-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관련시설 및 경비실 에어컨 설비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 결정에 따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승강기 : 삼환아파트 등 3개 단지 지원 · 공용시설 : 칠성아파트 등 3개 단지 지원
2024	· 승강기 : 풍년마을삼보아파트 등 2개 단지 지원 · 공용시설 : 신한아파트 등 3개 단지 지원
2025	· 승강기 : 풍년마을건영아파트 등 4개 단지 지원 · 공용시설 : 대지연립 1개 단지 지원 · 안전관련시설 : 화수싱그리아 등 5개 단지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00	320,000	-	-	
2024	200,000	200,000	-	-	
2025	455,000	350,502	-	104,49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단지 중 추후 공모하여 사업규모 결정		
사업목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으로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도비30%, 시비70%)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0,000	65,000	65,000	-	-	-	50,000	-15,000	
도비	15,000	19,500	19,500	-	-	-	15,000	-4,500	
시비	35,000	45,500	45,500	-	-	-	35,000	-10,500	
자부담	-	0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휴게시설 : 5,000천원×10개소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인식개선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및 사업량 배정 결정에 따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4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진흥흥화아파트 등 5개소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3차 등 9개소
2024	· 13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5차 등 6개소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강변마을동일하이빌 등 7개소
2025	· 15개소 지원 -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풍경마을 롯데캐슬 등 7개소 -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동일스위트 더파크뷰 2단지 등 8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50,000	-	-	
2024	50,000	49,584	-	416	
2025	65,000	37,862	-	27,1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사무관리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사업규모	관내 의무관리대상 191개 공동주택 단지		
사업목적	공동주택관리 우수 단지 육성 및 소관 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촉위원 참석수당과 운영물품 구입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시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시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시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520	11,640	11,640	-	-	-	11,640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7,520	11,640	11,640	-	-	-	11,640	-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640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모범관리단지 동판제작 : 300,000원*2개 = 600	600	
		· 모범관리단지 및 착아파트 평가반 현장 심사수당 : 60,000원*2시간*4명*2회 = 960	960	
		· 찾아가는 관리자문 안내서 등 공동주택 홍보책자 제작 : 2,000원*500부*3회 = 3,000	3,000	
		· 찾아가는 관리자문 관련 홍보물 제작 : 2,000원*300개 = 600	600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60,000원*9명*2회 = 2,880	2,880	
		· 공동주택관리(임대)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6명*2회 = 1,200	1,200	
		· 교통안전 실태점검 민간전문가 현장 심사수당 : 60,000원*10시간*2명*연2회 = 2,400	2,400	

□ 예산요구 사유

- 국토교통부 모범상생관리 우수단지,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을 위한 평가반(민간위원) 심사수당 및 최종 선정단지에 수여할 동판 제작
- 주택과 소관 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
- 공동주택 단지 대상 교육자료 및 홍보책자, 홍보물 제작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공동주택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
- 2026. 03. : 모범관리단지 평가반 현장 심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26. 06. : 모범관리단지 동판 제작 및 교통안전 실태점검(상반기) 실시
- 2026. 08. : 경기도 착한아파트 평가반 현장심사
- 2026. 11. : 교통안전 실태점검(하반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대면 1회, 서면 1회) · 홍보물 제작(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포스터, 근로자 휴게시설 현판 등) · 홍보책자 제작(공동주택관리안내서, 층간소음 갈등해결 안내서, 층간소음예방관리가이드북 등)
2024	· 2024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대면 1회, 서면 1회) · 국토교통부 모범관리단지 평가 현장심사(반도유보라6차), 경기도 착한아파트 평가 현장심사(강변마을동일하이빌) · 홍보물 제작(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 현수막), 홍보책자 제작(관리자문 안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가이드북 등)
2025	· 2025년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대면 1회, 서면 2회) · 국토교통부 모범관리단지 평가 현장심사(은여울마을경남아너스빌), 경기도 착한아파트 평가 현장심사(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 홍보물 제작(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 홍보책자 제작(관리자문 안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가이드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920	4,160	-	3,760	
2024	7,520	6,592	-	928	
2025	11,640	6,414	-	5,226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 공모	대표자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업목적	공동주택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및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정산이 필요없는 보조사업)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택 조례		제7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000	5,000	5,000	-	-	-	5,000	-	
시비	5,000	5,000	5,000	-	-	-	5,000	-	
자부담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00	5,000	-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자투표 비용 지원 : (1건 기준) 호당 250원*1,000세대*20개 단지	= 5,000	5,000	-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각종 법정동의 시, 복잡한 절차와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자투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주택 내 입주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캐슬앤파밀리에시티1단지 외 14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2024	· 반도유보라2차 외 16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2025	· 신안실크밸리3차 외 11개 단지 전자투표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5,000	5,000	-	4,808	4,808	-	192	192	-	
2024	5,000	5,000	-	5,000	5,000	-	-	-	-	
2025	5,000	5,000	-	2,743	2,743	-	2,257	2,257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설8급 전찬웅	전화	2255
-----	-----	------------------	-----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공동주택 법정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사업규모	관내 의무관리대상 191개 공동주택 단지		
사업목적	법정 의무교육을 통한 관리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방법강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법 제17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령 제18조제5항
	법령 위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교육 수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79	10,281	10,281	-	-	-	12,586	2,305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6,779	10,281	10,281	-	-	-	12,586	2,305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586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 : - 1,637동*35%*15,000원 = 8,595		
		· 소방안전 및 방법 교육 위탁교육비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 강사료: 2인*230,000원 = 460 - 여비: 2인*84,000원 = 168 - 교재: 590부*5,700원 = 3,363 ※ LH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따름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법정 의무교육 시행

□ 예산증감 사유

- 임대주택을 제외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동수 증가 반영 : 1,622동→1,637동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위탁) 지자체 지원비율 상승 : 30%→35%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교재 제작 부수 증가 : 시설물안전관리자→시설물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공동주택 교육 종합계획 수립·보고
- 2026. 0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위탁비 지급
- 2026. 10. :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동주택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수료자 : 994명 · 소방안전·방범 집합교육 실시(2023.10.25.) : 321명 참석
2024	· 공동주택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수료자 : 1,073명 · 소방안전·방범 집합교육 실시(2024.09.25.) : 372명 참석
2025	· 공동주택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수료+교육중(10.31.기준) : 818명 · 소방안전·방범 집합교육 실시(2025.10.22.) : 481명 참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62	6,589	-	73	
2024	6,779	6,772	-	7	
2025	10,281	10,088	-	1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김미진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 우명숙	전화	2348
-----	-----	------------------	-----	--------------	----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전기요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전수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지정 <input type="checkbox"/>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영구임대주택 21단지	대표자	영구임대주택 21개 단지 관리사무소
사업목적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 21개소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계)반복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통합관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템e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스템 <input type="checkbox"/> 보육통합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0,000	40,000	40,000	-	-	-	40,000	-	
시비	60,000	40,000	40,000	-	-	-	40,000	-	
자부담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0,000	40,000	-	
영구임대 주택 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4,000,000원(21개 단지 월 평균 전기료) × 10개월 =	40,000	40,000	-	

□ 예산요구 사유

-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 기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21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24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21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25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임대아파트 외 21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000	60,000	-	60,000	60,000	-	-	-	-	
2024	60,000	60,000	-	60,000	60,000	-	-	-	-	
2025	40,000	40,000	-	40,000	40,000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문상웅	전화	2405
-----	-----	--------------	-----	----------	----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3개 단지		
사업목적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
		·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000	53,000	53,000	-	-	-	50,000	-3,000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53,000	53,000	53,000	-	-	-	50,000	-3,000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201-01 사무관리비	· 전문감사관 수당: 300,000×3명×13회×4일 ·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비 (복합기 임차료, 사무용품 등)	= 46,800 = 3,200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 기획감사 및 컨설팅감사 등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선제 대응

□ 예산증감 사유

- 감사 운영비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0. : 기획감사 9개 단지 실시(컨설팅감사 6개 단지 포함)
- 2026. 1. ~ 12. : 민원감사 및 기획감사(컨설팅감사 포함)등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획감사 10개 단지 실시 · 민원감사 1개 단지 실시
2024	· 기획감사 11개 단지 실시 · 민원감사 2개 단지 실시
2025	· 기획감사 9개 단지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000	48,620	-	4,380	
2024	53,000	46,375	-	6,625	
2025	53,000	39,529	-	13,4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장 전삼재	담당자	시설7급 김유영	전화	2444
-----	-----	--------------	-----	----------	----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사업규모	관내 아파트 19개 단지(48개동)		
사업목적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900	35,000	35,000	-	-	-	40,320	5,320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39,900	35,000	35,000	-	-	-	40,320	5,320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320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01-01 시설비	· 420,000원 × 48개동(19개 단지) × 2회(상·하반기)	= 40,32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관내 제3종시설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단지 증가 예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정기안전점검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6. 03. ~ 06.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 2026. 07. ~ 12.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완료
2024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완료
2025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스템(FMS) 입력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00	37,818	-	6,182	
2024	39,900	32,031	-	7,869	
2025	35,000	14,355	-	20,6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조성주	담당자	시설7급 채유경	전화	2404
-----	-----	--------------	-----	----------	----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과 운영 물품 구입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3 제64조
		·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8조 제30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 및 자체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4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5,000	15,000	-	-	-	19,800	4,800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15,000	15,000	15,000	-	-	-	19,800	4,800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800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등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200,000원×6명×3회 = 3,600 · 공동주택 감리 및 현장점검 참석수당 200,000원×2명×32회 = 12,800 ·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8명×3회 = 2,400 · 품질점검단 등 운영비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참석수당 지급 및 운영비 필요
- 품질점검,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운영하여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주택과 소관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공동주택 착공현장 증가 예상(사업승인단지 7개 이상)으로 품질점검 및 감리실태점검 등 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 2026. 1. ~ 1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및 점검
- 2026. 1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동주택 품질점검(4회) ·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11회) · 자연재해(호우, 해빙기 등) 등 안전점검(6회)
2024	· 공동주택 품질점검(2회), 설계자문(5회) ·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7회) · 자연재해(호우, 해빙기 등) 등 안전점검(15회)
2025	· 공동주택 품질점검(1회), 설계자문(3회) ·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12회) · 자연재해(호우, 해빙기 등) 등 안전점검(9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4,939	-	61	
2024	15,000	14,981	-	19	
2025	15,000	11,562	-	3,43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행정팀장 조민신	담당자	시설7급 임영주	전화	2401
-----	-----	--------------	-----	----------	----	------

주거급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0,800여 가구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거급여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115,000	25,981,111	25,981,111	-	-	-	26,931,686	950,575	
국비	21,703,500	23,383,000	23,383,000	-	-	-	24,238,517	855,517	
도비	1,688,050	1,818,678	1,818,678	-	-	-	1,885,218	66,540	
시비	723,450	779,433	779,433	-	-	-	807,951	28,518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931,686	
기초생활 임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각 가구특성별 임차료 지급(10,684가구)	= 26,731,976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27가구)	= 199,710	
		- 대보수 : 16,010천원 * 1가구	= 16,010	
		- 중보수 : 10,950천원 * 6가구	= 65,700	
		- 경보수 : 5,900천원 * 20가구	= 118,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급여(전·월세)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집수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인상에 따른 대상자 확대
- 기준임대료(4인가구: 433천원→463천원)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주거급여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12. :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및 지급, 정산
- 2026. 03. : 수선유지급여 연간 수선계획 확정 및 LH 사업위탁 협약 체결
- 2026. 04.~12. : 수선유지급여 실시
- 2027. 01. : 수선유지급여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7,972가구(11,951명) / 월평균 소요예산 1,709,082천원 · 수선유지급여 31가구 공사 완료(총 집행: 162,027천원)
2024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8,732가구(13,015명) / 월평균 소요예산 1,942,861천원 · 수선유지급여 20가구 공사 완료(총 집행: 145,392천원)
2025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9,170가구(13,639명) / 월평균 소요예산 2,142,763천원 · 수선유지급여 25가구 공사 진행중(총 집행: 182,86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213,667	20,671,018	-	542,649	
2024	24,115,000	23,459,729	-	655,271	
2025	25,981,111	21,610,496	-	4,370,6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복지8급 정진희 행정9급 변혜수	전화	2416 2417 2414
-----	-----	------------	-----	----------------------------------	----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가구		
사업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한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800	22,800	22,800	-	-	-	22,800	-	
국비	11,400	11,400	11,400	-	-	-	11,400	-	
도비	-	-	-	-	-	-	-	-	
시비	11,400	11,400	11,400	-	-	-	11,400	-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80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3,800천원 * 6가구	= 22,8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주거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4.: 사업계획 및 대상자 모집 공고
- 2026. 04. ~ 2026. 07.: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
- 2026. 07. ~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성면 한○희 싱크대 교체, 온수기 설치, 전기배선 및 조명 교체 · 풍무동 김○경 욕실 세면대 교체, 문 및 문틀 교체, 환풍기 교체, 조명 교체 · 김포본동 김○성 창호 교체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무동 최○자 창호 교체 · 사우동 손○아 창호 교체, 조명 교체 · 장기동 한○금 단차제거, 문턱제거, 샤워기 교체 · 하성면 권○찬 외벽보수, 거실 바닥 보수, 도배·장판 시공 · 사우동 변○옥 욕실 교체, 욕실 문 교체, 조명 교체 · 사우동 이○덕 베란다 천정 보수, 도배·장판 시공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동 권○란 싱크대 교체 · 양촌읍 권○안 안전손잡이 설치, 문지방단차해소, 부엌가구 설치 · 양촌읍 이○훈 경사로 설치, 현관조명 교체 · 양촌읍 장○주 경사로 설치, 욕실문 교체 · 장기동 이○석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타일 및 백색도기 교체 · 하성면 서○숙 방문턱제거 및 방문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400	11,400	-	-	
2024	22,800	22,800	-	-	
2025	22,800	22,8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40가구		
사업목적	주거취약계층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의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5호, 2024.10.29.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사업, 이사비·생필품지원 사업 , 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00	16,000	12,000	-	-	4,000	16,000	-	
국비	6,000	8,000	6,000	-	-	2,000	8,000	-	
도비	1,800	2,400	1,800	-	-	600	2,400	-	
시비	4,200	5,600	4,200	-	-	1,400	5,600	-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 가구당 최대 400천원 * 40가구	= 16,000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가구에 대해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거주지로 이전 지원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12.: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2026.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자 : 20가구(총 집행액: 7,334천원)
2024	· 지원대상자 : 32가구(총 집행액: 12,000천원)
2025	· 지원대상자 : 28가구(총 집행액: 10,51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000	7,334	-	59,666	
2024	12,000	12,000	-	-	
2025	16,000	10,512	-	5,48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행정9급 변혜수	전화	2414
-----	-----	------------	-----	----------	----	------

청년월세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636명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0,000	1,031,000	734,000	-	-	297,000	1,525,284	494,284	
국비	330,000	515,500	367,000	-	-	148,500	762,642	247,142	
도비	99,000	154,650	110,100	-	-	44,550	228,793	74,143	
시비	231,000	360,850	256,900	-	-	103,950	533,849	172,999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25,284	
청년월세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임대료 월 최대 200천원까지 지원 - 200천원 * 636명 * 12개월	≒ 1,525,284	

□ 예산요구 사유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0천원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청년월세 지원기간 확대(12개월→24개월)되어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 발생에 대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2.~2025. 0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 2024. 03.~2027. 1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급
- 2026. 03.~05. : 청년월세 지원 신청
- 2026. 03.~08. : 심사
- 2026. 09. : 선정자 공지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자 : 207명(월평균 48,936천원)
2024	· 지원대상자 : 246명(월평균 61,548천원)
2025	· 지원대상자 : 391명(월평균 85,88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4,738	587,238	208,000	789,500	
2024	868,000	738,581	129,419	-	
2025	1,160,419	838,134	-	322,2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복지8급 정진희 행정9급 변혜수	전화	2416 2417 2414
-----	-----	------------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약183가구		
사업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000	85,600	107,000	-	-21,400	-	73,000	-12,600	
국비	35,000	42,800	53,500	-	-10,700	-	36,500	-6,300	
도비	10,500	12,840	16,050	-	-3,210	-	10,950	-1,890	
시비	24,500	29,960	37,450	-	-7,490	-	25,550	-4,410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0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400천원 * 183가구	≒ 73,000	

□ 예산요구 사유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실 납부액을 최대 400천원까지 지원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일괄 감액
※ 경기도와 국토부에 예산 증액 요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2026년도 사업계획 시행 및 홍보
- 2026. 03. ~ 2026. 12.: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6. 12. ~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접수 130건 : 적합 103건 지원(부적합 27건)
2024	· 접수 387건 : 적합 317건 지원(부적합 70건)
2025	· 접수 431건 : 적합 321건 지원(부적합 11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800	21,864	-	6,936	
2024	70,000	70,000	-	-	
2025	85,600	74,429	-	11,1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0가구		
사업목적	주택이외의 거처(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정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성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거기본법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815호, 2024.10.29.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정·환경 개선사업, 이사비·생필품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	100,000	100,000	-	-	-	100,000	-	
국비	-	50,000	50,000	-	-	-	50,000	-	
도비	-	20,000	20,000	-	-	-	20,000	-	
시비	-	30,000	30,000	-	-	-	30,000	-	
기타	-	-	-	-	-	-	-	-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240일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8시간*2명*55일 - 4대보험료 등 : 7,773천원 - 여비 : 60,000원*2명*11월	64,460 = 45,044 = 10,323 = 7,773 = 1,320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비 : 300천원*12월 · 홍보물 제작(리플릿 등)	5,000 = 3,600 = 1,400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 유지관리비 등	= 1,000	
	201-03 행사운영비	· 특화사업	= 5,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주거상향지원 사업비 - 이주지원(청소 등) : 260천원*20가구 - 정착지원(생필품) : 700천원*20가구 - 임시거처지원(임대료) : 400천원*4가구*3월	24,000 = 5,200 = 14,000 = 4,800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 행사 급식비 : 9,000원*20명*2회 · 행사 간식비 : 4,500원*20명*2회	540 = 360 = 180	

□ 예산요구 사유

-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2명) 공고 및 채용
 - 2026. 01.~03.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 2026. 01.~12. : 사업 추진
 - 2026. 10. : 주거상향 지원 대상자 특화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지원대상자 : 이주완료 10가구, 이주대기 17가구, 이주신청 7가구(총 34가구) · 주거상향 지원대상 특화사업(정리·수납 교실) 추진('25.10.2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0	62,221	-	37,77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전화	2416
-----	-----	------------	-----	----------	----	------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민원동, 3층)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조례	김포시주거복지지원조례	제11조(주거복지센터) 제1항 시장은 법 제22조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702	5,000	5,000	-	-	-	5,000	-	
국비	-	-	-	-	-	-	-	-	
도비	-	-	-	-	-	-	-	-	
시비	18,702	5,000	5,000	-	-	-	5,000	-	
기타	-	-	-	-	-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주거복지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비 : 250,000원*12월 · 홍보물 제작 : 2,000원*500부*2회	= 3,000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관 및 지원체계 필요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9. : 주거복지센터 개소
- 2026. 01.~ : 주거복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등 연중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주거복지센터 개소('24.9.2.) · 주거복지센터 벤치마킹 : 고양시 및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방문('24.9.) · 주거복지센터 홍보 : LH,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5개소 방문('24.10.) ·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 읍면동 및 유관기관 담당자 28명 참여('24.10.) · 맞춤형 주거상담 : 전화 17건, 내방 4건, 가정방문 12건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25.1.~) · 주거복지사업 순회교육('25.2, 25.9.) ·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운영 : 통진읍, 양촌읍, 김포본동('25.4.~7.) · 주거상향 지원사업 관련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물 확보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 홍보('25.8.~9) · 주거상향지원사업 관련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협약(15개소) · 맞춤형 주거상담 : 전화 513건, 내방 35건, 가정방문 81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8,702	15,112	-	3,590	
2025	5,000	4,095	-	9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전화	2416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건축과

(건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건축과
요구액	1,594,81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5	25	25	-	15	-10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5	25	25	-	15	-10	기타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6,000	806,000	806,000	-	806,000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700,000	800,000	800,000	-	800,000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기타과태료	6,000	6,000	6,000	-	6,000	-	건축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 보조금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조금	40,800	340,800	340,800	-	788,800	448,000	
시·도비보조금등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	300,000	300,000	-	700,000	400,000	사업보조금(도비) 교부
시·도비보조금등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40,800	40,800	40,800	-	58,800	18,000	사업보조금(도비) 교부
시·도비보조금등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	-	-	-	30,000	30,000	사업보조금(도비) 교부

농촌 빈집 정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촌지역
사업규모	5개소(예정), 10,000천원 (도비 30%, 시비70%)		
사업목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임규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20,000	20,000	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2,000	6,000	6,000				3,000	-3,000	
시비	8,000	14,000	14,000				7,000	-7,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촌 빈집 정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 2,000천원*5개소(예정)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방치된 빈집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으로 이용될 수 있어 빈집 정비 필요
- 빈집 철거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5년 대비 경기도 보조금 지원액 감소
※ 기존 김포시 20,000천원 (4,000천원* 5개소) → 10,000천원(2,000천원 *5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경기도 가내시 사전 통보
- 2026. 1. :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3. : 사업 공고 및 대상자 모집
- 2026. 4. :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5. ~ 12. :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6. 12. :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빈집 10개소 대한 철거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 당 200만 원 지급)
2024	- 빈집 2개소 대한 철거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 당 200만 원 지급)
2025	- 빈집 4개소 대한 철거 완료 및 보조금 지급(동 당 400만 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19,980		10,020	
2024	10,000	4,000		6,000	
2025	20,000	16,000		4,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6급 조한욱	전화	2386
-----	-----	------------	-----	----------	----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노후 단독주택·공동주택 단지
사업규모	10개 단지, 3개 가구, 196,000천원(도비 30%, 시비70%)		
사업목적	단독주택·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전유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제85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6,000	136,000	136,000	0	0	0	196,000	60,000	
국비		0						0	
도비	28,800	40,800	40,800				58,800	18,000	
시비	67,200	95,200	95,200				137,200	4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6,000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공동주택(공용) : 16,000,000원*10개 단지 ·단독주택 : 12,000,000원*3개 가구	= 160,000 = 36,00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고,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독주택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23년 7개소(공동주택) → '24년 6개소(공동주택) → '25년 9개소(단독주택 공동주택) → '26년 13개소(단독주택 공동주택)
- '24년도 37개 단지 신청, '25년도 31개(단독 5개, 공동 26개) 신청 등 매년 소규모 노후주택 및 수요도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상기 예산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12. : '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0개소 지원
- 2024. 1. ~ 12. : '24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10개소 지원
- 2025. 1. ~ 12. : '25년 노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9개소 지원
- 2025. 12. : 도비 확정내시 알림
- 2026. 2. : '26년 지원사업 공고
- 2026. 3. : 신청지 현장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 2026. 4. :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착수
- 2026. 12. : '26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110,755,680원)
2024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93,037,600원)
2025	· 노후 소규모 노후주택 9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109,031,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2,000	110,756	-	1,244	
2024	96,000	93,038	-	2,962	
2025	136,000	109,031	-	26,969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13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96,000
부기명 (세부사업)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현장사진					
	'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단독주택 김연이)	'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중앙빌라 마동)			
					
	'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성미연립 C동)	'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그린빌라 다동)			
					
	'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 (현대그린빌라 A,B동)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6급 조한욱	전화	2386
-----	-----	------------	-----	----------	----	------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노후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연립)
사업규모	6개소, 60,000천원(도비 50%, 시비50%)		
사업목적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민간분야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자발적 참여 유도하도록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
	위임규정	제11조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60,000	60,000	
국비		0						0	
도비	0	0	0				30,000	30,000	
시비	0	0	0				30,000	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10,000,000원*6개소 - 경기도 가내시 6개소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민간분야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배정

□ 예산증감 사유

- '26년 수요조사 결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개소이상의 해당사업 요청(경기도 가내시 6개)에 따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상기 예산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수요 조사 후 도에 지원 요청
- 2025. 10. : 도비 가내시 알림(6개소)
- 2025. 12. : 도비 확정내시 알림
- 2026. 2. : '26년 지원사업 공고
- 2026. 3. : 신청지 현장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 2026. 4. :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착수
- 2026. 12. : '26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료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6급 조한욱	전화	2386
-----	-----	------------	-----	----------	----	------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연20회 이상 개최)		
사업목적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구조안전심의 등 전문위원회 심의, 건축사 징계위원회 등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문화를 육성하여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법	제4조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건축조례	제11조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400	18,500	18,500	0	0	0	18,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400	18,500	18,500				18,5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500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동(건축·경관·교통)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100,000원*10명*10회 = 10,000 · 전문(구조·계획·교통) 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100,000원*5명*12회 = 6,000 · 기타 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100,000원*5명* 5회 = 2,5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법 제4조 및 김포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 및 구조안전 심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교통성 검토 심의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건축 업무의 효율화 및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건축문화 정착
- 건축사 징계(50만 대도시 위임사무)를 위하여 건축사법 제30조4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 월 1회 심의 개최(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포함)
- 전문위원회 (구조·계획·교통) : 월 2회 심의 개최
-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교통성 검토 등 기타 전문위원회 : 발생 시 수시 개최
- 건축사징계위원회 : 발생 시 수시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8회 · 건축위원회 1회 · 전문위원회(구조 13회, 계획 1회) 14회
2024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5회 · 전문위원회 (구조 19회, 계획 2회) 총 21회
2025	·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3회 · 건축위원회 1회 · 전문위원회(구조 21회, 계획 4회, 교통 1회) 26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0	9,795	-	3,405	
2024	10,400	7,460	-	2,940	
2025	18,500	10,090	-	8,41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7급 강미숙	전화	2400
-----	-----	------------	-----	----------	----	------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위반건축물 단속반 피복비(안전화, 하계피복 등), 현장점검 시 민원인 응대용 공용핸드폰 통신비		
사업목적	위반건축물 단속 안전 확보, 민원 응대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5항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60	1,080	1,080	0	0	0	1,920	8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60	1,080	1,080				1,920	8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20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201-01 사무관리비	· 단속반 피복비(안전화, 하계피복 등) : 140,000원*6명 = 840,000원 =	840	
	201-02 공공운영비	· 통신비 : 45,000원*2대*12월	1,080	

□ 예산요구 사유

- 위반건축물 현장 단속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안전화 및 하계피복 등) 필요
-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의 안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위반건축물 단속반 피복비 증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통신비 지출(매월), 안전용품(안전화 및 하계피복 등) 구매(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2024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2025	· 공용폰(2대) 통신비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00	1,196	-	4	
2024	1,260	991	-	269	
2025	1,080	804	-	2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조은희	담당자	시설7급 임종수	전화	2408
-----	-----	------------	-----	----------	----	------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사업목적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대행으로 내실있는 관리계획 수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 제7항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6416호, 2019.04.30.>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 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9,000	155,000	95,000	0	0	60,000	95,000	-6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9,000	155,000	95,000			60,000	95,000	-6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5,000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201-01 사무관리비	· 적절성 검토 업무대행 수수료 : 600,000원*158건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평균 예산가 600,000원 = 산정(연면적별 수수료는 상이함)	95,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주가 제출한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추진실적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은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수시 검토 성격의 사업 특성상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업무대행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162건, 집행액 : 76,061천원(사용승인 122건: 44,209천원, 기존건축물 40건 31,852천원)
2024	·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179건, 집행액 : 98,603천원(사용승인 118건: 46,555천원, 기존건축물 61건: 52,048천원)
2025	·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194건, 집행액 : 133,190천원(사용승인 93건: 40,059천원, 기존건축물 101건: 93,13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000	76,061	-	29,939	
2024	99,000	98,603	-	397	
2025	155,000	133,190	-	21,81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권완택	담당자	시설8급 김정주	전화	5351
-----	-----	--------------	-----	----------	----	------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소규모 노후 건축물,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사업목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등 사전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제15조, 제30조의4 제87조의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00	12,000	12,000	0	0	0	16,000	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00	12,000	12,000				16,000	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외부 전문가 점검(자문) 수당 : 200,000원*2명*40회	= 16,000	

□ 예산요구 사유 및 「건축법」

-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현장 점검 필요
-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와 현장점검을 통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김포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자문수당 인상분 반영
(당초 150,000원 → 변경 200,000원 / 2시간 기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자문) 수행(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빙기 대비,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공공건축물 공사장 합동점검 등 총 14개소 안전점검 수행
2024	· 봄철 대비, 집중호우 대비, 강풍 대비 등 총 108개소 안전점검 수행
2025	· 해빙기 대비, 봄철 안전사고 예방, 집중호우 대비, 강풍 대비 등 총 83개소 안전점검 수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00	6,900	-	300	
2024	12,000	12,000	-	-	
2025	12,000	8,550	-	3,4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권완택	담당자	시설7급 한진만	전화	5350
-----	-----	--------------	-----	----------	----	------

건축물 안전관리 물품구입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물품구입		
사업목적	건축물 안전점검 물품구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점검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물관리법		제3조, 제15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	2,340	2,340	0	0	0	2,34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00	2,340	2,340				2,34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40	
건축물 안전관리 물품구입비	201-01 사무관리비	· 안전관리 물품 구입비 : 1,500,000원*1식 - 안전모, 안전장갑, 재난안전선 등 안전용품 구입	= 1,500	
		· 점검반 피복비(안전화 등) : 140,000원*6명	= 840	

□ 예산요구 사유

-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시 안전모, 안전장갑, 재난안전선 등 안전용품 필요
- 안전한 현장점검을 위한 안전점검용 작업복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건축물 안전관리 물품구입(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용 피복 구입 (점검용 장갑, 재난안전선, 안전화 등) 구입
2024	·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용 피복(안전화 등) 구입
2025	·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용 피복(안전화 등)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40	2,139	-	1	
2024	1,600	1,600	-	-	
2025	2,340	1,013	-	1,3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권완택	담당자	시설8급 김정주	전화	5351
-----	-----	--------------	-----	----------	----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
사업규모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대상건축물		
사업목적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상태 확인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 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00	8,640	9,600	0	0	-960	22,000	13,3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400	8,640	9,600			-960	22,000	13,3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실태조사 용역비 : 800,000원 * 약 28개소 ·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 · - 기술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 포함	22,000	

□ 예산요구 사유

-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 및 안전성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3종시설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된 5,000㎡ ~ 30,000㎡ 미만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량 확대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26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6. 3.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
- 2026. 5.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준공 및 지정 대상 확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5개소 용역비 : 4,000천원
2024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6개소 용역비 : 5,400천원
2025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8개소 용역비 : 8,64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	4,000	-	-	
2024	5,400	5,400	-	-	
2025	8,640	8,64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권완택	담당자	시설7급 한진만	전화	5350
-----	-----	--------------	-----	----------	----	------

공공건축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각종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을 위한 경비					
사업목적	·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심의 및 자문을 통한 적절한 설계용역 수행 · 공공건축 건립을 위한 각종 용역(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및 건축시공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4항 / 제22조의3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④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940	5,200	5,200	0	0	0	5,100	-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940	5,200	5,200				5,100	-1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00	
공공건축심의 및 평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10명*3회	= 3,000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위원 참석 수당 : 100,000원*3명*7회	= 2,1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4항에 의거, 건축기획의 심의 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공건축 건립에 따른 각종용역(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위원회 심의·평가자료 제작비를 제외하여 전년 대비 100천원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9.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2023. 1. ~ 1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3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개최(13건)
- 2024. 1. ~ 1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1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개최(9건)
- 2025. 1. ~ 10.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2건) 및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개최(1건)
- 2026. 1. ~ 1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건축심의위원회(1회 2건 조건부 가결, 2회 1건 조건부 가결)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1회 7건 건설기술용역 평가 위원 수당 지급, 2회 4건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2건 시공 평가 관련 위원 수당 지급)
2024	· 공공건축심의위원회(1회 1건 조건부 가결)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1회 4건 건설사업관리 평가, 시공 평가, 2회 1건 설계용역 평가, 3회 2건 건설사업관리 평가, 설계용역 평가, 4회 1건 건설사업관리 평가, 5회 1건 건설사업관리 평가) 수당 지급
2025	· 공공건축심의위원회(1회 1건 조건부 가결, 2회 1건 조건부 가결)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위원회(1회 1건 건설사업관리 평가 개최) / (11~12월: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2회 개최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00	3,257	-	243	
2024	6,940	2,520	-	4,420	
2025	5,200	1,900	-	3,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9급 이진혁	전화	5064
-----	-----	-------------	-----	----------	----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사업규모	공공건축물 품질점검을 위한 경비		
사업목적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5,400	5,400	0	0	0	4,800	-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	5,400	5,400				4,800	-6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201-01 사무관리비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현장점검 참석수당 : 200,000원*4명*6회 =	4,80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건축물 공사시 민간전문가의 현장점검과 자문을 통해,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및 공사중 불안전 요소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3년간 품질점검단 운영 결산 현황을 반영하여 감액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2.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
- 2022.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1개 현장(통진읍행정복합청사)
- 2023.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6개 현장(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
- 2024.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8개 현장(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외 7개소)
- 2025.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6개 현장(김포보훈회관 외 5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운영(6개 현장, 총25명)
2024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운영(8개 현장, 총17명)
2025	·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운영(6개 현장, 총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	3,750	-	250	
2024	6,000	2,550	-	3,450	
2025	5,400	1,050	-	4,3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1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9급 김정현	전화	5052
-----	-----	-------------	-----	----------	----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기간	2021. 7. ~ 2027. 3.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12,873	652,320	382,320	0	270,000	0	5,404,560	4,752,240	
국비	2,942,987	0						0	
도비	378,382	300,000	300,000				700,000	400,000	
시비	891,504	352,320	82,320		270,000		4,704,560	4,352,2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04,560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2차) 공사비	= 4,914,560	
	401-02 감리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 450,000	
	401-03 시설부대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준공 25년 된 중봉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제공
- 2027년 준공인 다년도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완료 후 26년 일반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편성 필요
- 일반리모델링(2차) 실시설계 완료(26년 3월 예정) 후 시공비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2.5. (도)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 ~ 2022. 2.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22. 5. ~ 8. :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결과: 조건부)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 2023. 8.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4,478,120천원)
- 2024. 5. ~ 12. : 그린리모델링(1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5. 9. : 그린리모델링(1차) 공사 착수
- 2025. 11. ~ 2026. 3. : 일반리모델링(2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4. : 그린리모델링(1차) 공사 준공
- 2026. 5. : 일반리모델링(2차) 공사 착수
- 2026. 12. : 일반리모델링(2차)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6,100,000	10,695,440	5,404,560	5,404,560	0	0	
공정별	설계비	680,000	680,000	0			
	보상비	5,500,000	5,500,000	0			
	공사비	9,180,000	4,265,440	4,914,560	4,914,560		
	감리비	700,000	250,000	450,000	450,000		
	부대비	40,000	0	40,000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2024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0억 신청(2025년 설계비 3억, 2026년 공사비 7억)
2025	-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1차)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43,120	56,361	4,486,759		
2024	4,486,759	273,886	4,212,873		
2025	4,865,193	1,108,871	1,816,205	1,940,117	10.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5,404,560
부기명 (세부사업)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1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유진호	전화	5053
-----	-----	-------------	-----	----------	----	------

운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기금)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4. 11.	사업위치	김포한강11로 333
사업규모	연면적 4,512.75㎡ (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체육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2,256,000	21,835,839	420,161	0	356,094	64,067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2,256,000	21,835,839	420,161	0	356,094	64,067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	
운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	-	-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에 따른 BF공사 및 본인증 수수료 납부 집행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원안가결	-	-	-	-
일자	2023.11. 반영	2022.8.	-	-	-	-	2022.11.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완료
- 2019. 9.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019. 12. : 토지매입 완료
- 2020. 7. ~ 2021. 10.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 2022. 3. : 공사 착공
- 2024. 11. : 공사 준공
- 2026. 1. : BF 본인증 개선공사(예정)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2,256,000	22,256,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725,000	725,000	0			
	보상비	4,082,000	4,082,000	0			
	공사비	15,380,000	15,380,000	0			
	감리비	1,916,000	1,916,000	0			
	부대비	153,000	153,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토목공사 · 바닥공사, 지하층, 수영장 공사 등
2024	· 건립공사 준공
2025	· 건립공사 준공 정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28,623	3,650,707	5,377,916	-	
2024	7,780,561	5,489,701	2,290,860	-	
2025	420,162	356,095	56,532	7,53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4,512.75㎡ (지하1층/지상4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사업위치	김포한강11로 33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7급 조은상	전화	5063
-----	-----	-------------	-----	----------	----	------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5. 12. 14.	사업위치	양도로56번길 101 (풍무동 780)
사업규모	연면적 3,193.64㎡ (지하1층 지상3층,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헬스장 등)		
사업목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풍무동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체육 활성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7,760,000	4,610,312	3,149,688	7,740,000	4,896,866	5,992,822	-	-	-
국비	1,800,000	1,800,000	-	-	-	-	-	-	-
시비	5,960,000	2,810,312	3,149,688	7,740,000	4,896,866	5,992,822	-	-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0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	-	=	-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예산 이월 후 준공금 집행예정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2025년 총사업비 전액 수립 완료 및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원안가결				
일자	2024.11. 반영	2022.08.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2021. 3.: 건축 기획용역
- 2021. 8. ~ 2023. 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11.: 공사착공
- 2025. 12.: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3회추경 (D)		
계	15,500,000	7,760,000	7,740,000	5,650,000	2,090,000	0	
공 정 별	설계비	450,916	450,916	0	-	-	-
	공사비	13,254,084	6,749,084	6,505,000	4,950,000	1,555,000	-
	감리비	1,695,000	500,000	1,195,000	660,000	535,000	-
	부대비	100,000	60,000	40,000	40,000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2024	· 공사진행
2025	· 공사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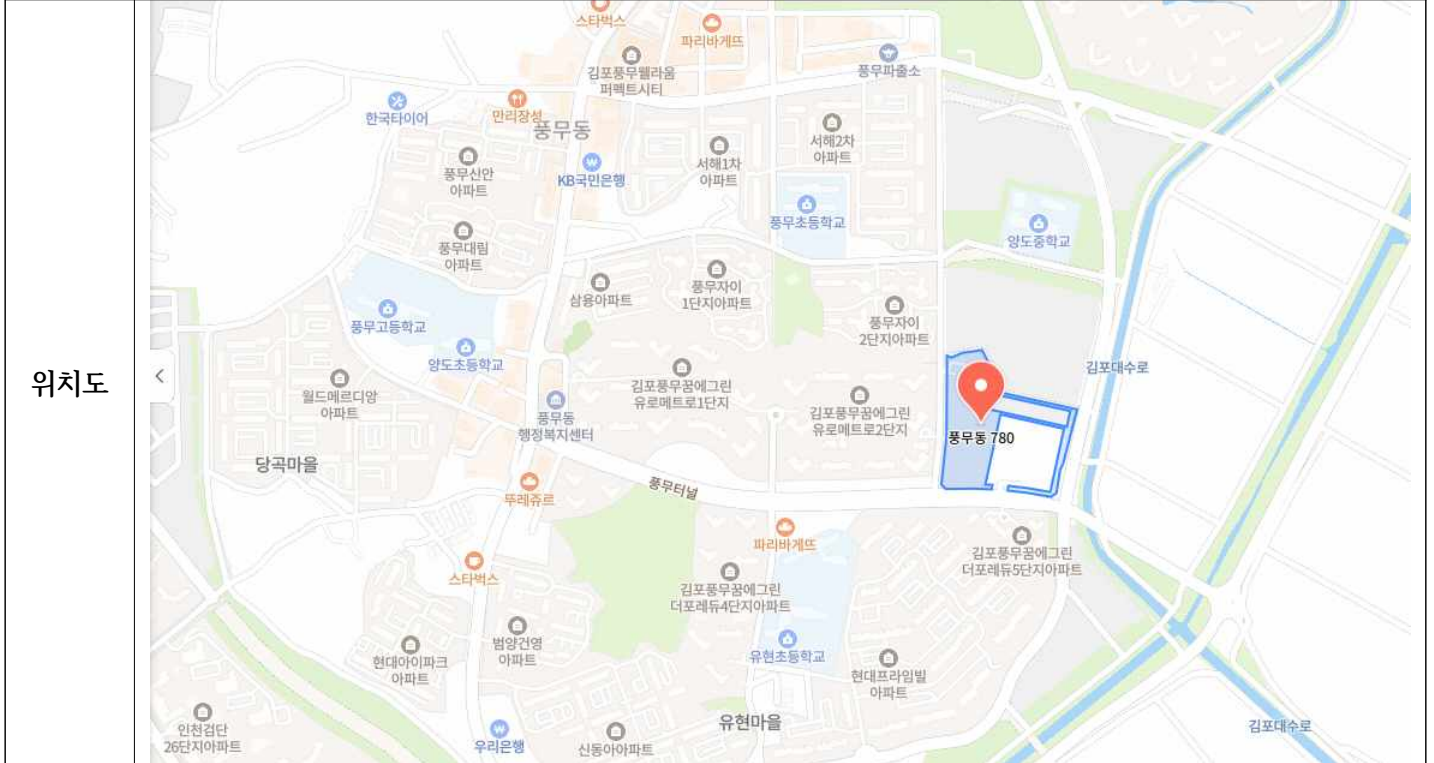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97,206	900,117	3,797,089	-	
2024	6,497,089	3,347,401	3,149,688	-	
2025	10,889,688	4,896,866	-	5,592,82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체육과	사업규모	연면적 3,193.64㎡ (지하1층/지상3층)	본예산 요구액	-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위치	양도로56번길 101(풍무동 78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1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정희규	전화	5054
-----	-----	-------------	-----	----------	----	------

보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8. ~ 2025. 3.	사업위치	풍무로146번길 82
사업규모	연면적 1,833.87㎡, (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단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제공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해당조례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8,796,420	7,315,439	1,480,981	1,234,000	2,549,326	165,655	0	0	0
국비	500,000	485,085	14,915	0	14,915	0	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8,296,420	6,830,354	1,466,066	1,234,000	2,534,411	165,655	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	
보훈회관 건립공사	-	-	-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에 수수료 납부 집행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승인	완료	-	-	-	원안가결	-	-	-	-
일자	2024.11 반영	2023.3. (도)	2021.5.	-	-	-	2021.1.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8. ~ 11. :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3. ~ 2024.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4. 3. : 공사 착공
- 2025. 3. : 공사 준공
- 2025. 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개선공사 준공
- 2026.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의(예정)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0,130,420	10,130,420	0	0	0	0	
공정별	설계비	275,000	275,000	0			
	보상비	1,449,420	1,149,420	0			
	공사비	7,260,000	7,260,000	0			
	감리비	1,100,000	1,100,000	0			
	부대비	46,000	46,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시공사 선정 및 계약(건축, 전기, 통신, 소방)
2024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공사 착공
2025	· 건립공사 준공 · BF본인증 개선공사 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35,633	22,000	4,613,633	-	
2024	7,113,633	5,632,651	1,480,982	-	
2025	2,714,981	2,549,326	78,304	87,35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1,833.87㎡ (지하1층/지상4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보훈회관 건립공사	사업위치	풍무로146번길 82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7급 조은상	전화	5063
-----	-----	-------------	-----	----------	----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7. ~ 2027. 3.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4,543,120	330,247	4,212,873	652,320	945,705	3,919,488	5,404,560	5,404,560	
국비	3,134,680	191,693	2,942,987		839,705	2,103,282			
도비	403,032	24,650	378,382	300,000		678,832	700,000	700,000	
시비	1,005,408	113,904	891,504	352,320	106,000	1,137,824	4,704,560	4,704,56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04,560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2차) 공사비	= 4,914,560	
	401-02 감리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 450,000	
	401-03 시설부대비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준공 25년 된 중봉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제공
- 2027년 준공인 다년도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 완료 후 26년 일반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편성 필요
- 일반리모델링(2차) 실시설계 완료(26년 3월 예정) 후 시공비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2.5. (도)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 ~ 2022. 2. :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022. 5. ~ 8. :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결과: 조건부)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 2023. 8.: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4,478,120천원)
- 2024. 5. ~ 12. : 그린리모델링(1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5. 9. : 그린리모델링(1차) 공사 착수
- 2025. 11. ~ 2026. 3. : 일반리모델링(2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4. : 그린리모델링(1차) 공사 준공
- 2026. 5. : 일반리모델링(2차) 공사 착수
- 2026. 12. : 일반리모델링(2차)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6,100,000	10,695,440	5,404,560	5,404,560	0	0	
공정별	설계비	680,000	680,000	0			
	보상비	5,500,000	5,500,000	0			
	공사비	9,180,000	4,265,440	4,914,560	4,914,560		
	감리비	700,000	250,000	450,000	450,000		
	부대비	40,000	0	40,000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2024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0억 신청(2025년 설계비 3억, 2026년 공사비 7억)
2025	-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1차)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43,120	56,361	4,486,759		
2024	4,486,759	273,886	4,212,873		
2025	4,865,193	1,108,871	1,816,205	1,940,11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4,932㎡, 지하1층/지상4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5,404,560
부기명 (세부사업)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위치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1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유진호	전화	5053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토지정보과
요구액	3,890,03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44,235	420,966	420,430	536	416,800	-4,166	
수수료수입 ◎증지수입/기타수수료	14,700	20,330	20,330	-	16,700	-3,630	인터넷발급 증가로 현장 발급 감소 부동산종합증명서 인터넷 민원수수료 정산금 세입처리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529,485	400,000	400,000	-	400,000	-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0	636	100	536	100	-536	유지관리사업 반환금 이자로 추정편성예정
임시적세외수입	4,564,650	201,170	300,100	-98,930	300,000	98,830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1,398	1,070	-	1,070	-	-1,070	유지관리사업 반환금으로 추정편성예정
기타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그외수입	4,563,252	200,100	300,100	-100,000	300,000	99,900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 예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12,600	2,855,000	3,020,000	-165,000	2,950,000	95,000	
과징금 ◎과징금	-	10,000	10,000	-	10,000	-	
과태료 ◎기타과태료	512,000	445,000	610,000	-165,000	540,000	95,000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준공 직후 전화 안내 및 우편발송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함
부담금 ◎부담금	3,300,000	2,400,000	2,400,000	-	2,400,000	-	개발부담금 정수

○ 보조금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국고보조금	181,537	119,925	117,954	1,971	208,893	88,968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181,537	119,925	117,954	1,971	208,893	88,968	신규사업(연속지적도)
시·도비보조금등	12,537	6,925	6,925	-	14,340	7,415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2,537	6,925	6,925	-	14,340	7,415	신규사업(안전전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업규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업목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상시 유지보수체계를 수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위임규정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949	46,800	46,800	0	0	0	48,886	2,0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949	46,800	46,800				48,886	2,0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886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주전산기 서버 유지보수 : 3,020,000원×12월	= 36,240	
		· 상용 SW 유지보수 : 105,380,000원×12%	= 12,646	

□ 예산요구 사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상시 유지보수체계를 수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장애발생 대비 및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함
-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에 배포한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시스템 보수

□ 예산증감 사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유지보수 유료화 서비스 전환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5년 서버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6. 1. : GIS 및 미들웨어(상용S/W)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6. 1. ~ 1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2024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2025	- 월별 정기 예방정비 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처리로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 - 주전산기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측정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튜닝,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운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00	44,686	-	114	
2024	44,949	44,857	-	92	
2025	46,800	30,286	-	16,5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8급 허태강	전화	2134
-----	-------	----------	-----	----------	----	------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청(사우중로 1) 토지정보과 지적팀
사업규모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12개월, 업무배상공제회비 11명		
사업목적	소모품 구입,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5호
	법령 위임규정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39	14,689	14,689	0	0	0	15,168	47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039	14,689	14,689				15,168	47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168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	201-01 사무관리비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833,333원*12개월	= 10,000	
	201-02 공공운영비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290,000원*12개월 · 업무배상공제 회비(지적측량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153,410원*11명	= 3,480 = 1,688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수립
-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으로 업무 안전성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단가 인상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업무배상공제 및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 추진 및 체결
- 2026. 1. ~ 12.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및 지적민원처리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 통지 등 우편료 지출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2,350천원)
2024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2,350천원)
2025	- 지적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및 수리 - 업무배상공제회비 지출 - 지적서고 향온항습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3,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704	18,067		1,637	사무관리비 12,000천원 감액
2024	14,039	14,039		-	
2025	14,689 (향온항습기 3,000)	11,357 (향온항습기 2,250)		3,332 (향온항습기 7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송은선 시설9급 김주리	전화	2132 2133
-----	-------	----------	-----	----------------------	----	--------------

영구지적물 전산화 사업

사업기간	2026. 3. ~ 10.	사업위치	김포시청(사우중로 1) 정보관 서버실
사업규모	2024년 생산 측량결과도 1,860매, 토지이동결의서 30,000매		
사업목적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기록물 전산화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9조제2항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630	38,376	38,376	0	0	0	36,948	-1,4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630	38,376	38,376			0	36,948	-1,4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948	
영구지적물 전산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2024년 생산 측량결과도(A2, 종이) 전산화 추진: 7,800원*660매 = 5,148 · 2024년 생산 측량결과도(A2, PDF) 전산화 추진: 7,000원*1,200매 = 8,400 · 2024년 생산 토지이동결의서(A4) 전산화 추진: 780원*30,000매 = 23,400		

□ 예산요구 사유

-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등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업무 추진 효율성 제고
- 화재 등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 분·소실 시 복구 자료 사전 확보 [지적공부 영구보존]
- 토지정보과 및 타 부서 소송, 인·허가 확인 등 업무 협조 요청 시 신속 업무 처리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 수량 및 토지이동 신청 접수량 증가 (4회 추경 4,600천원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 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2026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4. : 2026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 계약 체결
- 2026. 6. ~ 10. : 2026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기간: 2023. 3. ~ 8. - 2021년 생산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1,6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2024	- 사업기간: 2024. 3. ~ 10. - 2022년 생산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1,120매, 토지이동결의서 38,000매)
2025	- 사업기간: 2025. 3. ~ 10. - 2023년 생산 영구지적물(지적측량결과도 2,700매, 토지이동결의서 25,500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680	37,680		-	
2024	33,630	33,630		-	
2025	38,376	33,763		4,61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9급 김주리	전화	2133
-----	-------	----------	-----	----------	----	------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6. 2.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연속지적 도곽(4,496도곽)		
사업목적	지적도 및 임야도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국토계획 수립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0조의2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1조
		제21조(도면정비) ①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임야)도의 행정구역·축척·도곽별로 등록된 필지의 경계 간 이격·공백·중복 등의 오류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568호(2024.02.01.) :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계획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66,000	66,000	
국비		0					33,000	33,000	
도비		0						0	
시비		0					33,000	33,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000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작성(김포시 전지역)	= 66,000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작성 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단가로 결정되며, 경기도 토지정보과-22336호(2025.9.19.)로 국비 예산 배정(안) 통지

□ 예산요구 사유

- 종이로 작성 되어있는 지적공부를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제거 과정 없이 전산화 되어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적도:2018년~2022년까지 정비 완료, 임야도:2025년 완료 예정) 지적도와 임야도가 정비됨에 따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오류 정비 및 공신력 향상
- 연속지적도는 개별지적도를 조사·측량없이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사항(위치·이격·중복 등)이 발생·내포되어 정비 필요

- 지역좌표 기준의 지적도와 연속지적도에서 지적도만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좌표를 일치시킬 필요
- 연속지적도는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공간정보플랫폼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신뢰도 및 최신성의 문제로 국회 등에서 시정 요구(※국정감사 지적사항)

□ 예산증감 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 2025년 임야도 및 미등록토지 KRAS 정비사업의 후속작업으로 연속도 정비사업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정비 의뢰 및 착수
 - 2026. 3. ~ 10. : 자료조사 및 업무협약, 세부측량 및 정비업무 수행, 성과품 작성 및 검사
 - 2026. 11. : 납품 및 검수
 - 2026. 12. : 성과품 반영 및 수수료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송은선	전화	2132
-----	-------	----------	-----	----------	----	------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관내 중개업소(약 1,300개소) 및 법무사 등 불특정 다수 민원인		
사업목적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교육 활동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 단속 활동을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한 사항을 관내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위임규정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거래 제도 등 홍보물 제작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0	2,700	2,700				2,700		
국비									
도비									
시비	2,700	2,700	2,700				2,700	-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 1,000원×2,700매	= 2,700	

□ 예산요구 사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중개업자 및 법무사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전·월세 제도 시행 관련 등)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집행
- 2023.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지출
- 2024.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 2025.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 2026. 01. ~ 12.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련 홍보물 제작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부동산거래신고 업무 직무교육 교재 제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 3,000매
202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현수막 및 배너 제작(6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10월)
2025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 현수막 및 배너 제작(5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7월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580	12,582		998	
2024	2,700	2,662		38	
2025	2,700	2,094		60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8급 이대웅	전화	2149
-----	-------	------------	-----	----------	----	------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관내 공인중개사 880여명 대상		
사업목적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 실무에 관한 사항을 재숙지하고 인지하여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책임에 근거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1.연수교육 실시 2.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104	6,925	6,925	0	0	0	14,180	7,255	
국비		0						0	
도비	11,104	6,925	6,925				14,180	7,255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180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강사료 : 750,000원*4과목 ·대관료 : 500,000원*2회 ·교재비 : 8,000원*880권 ·행사운영비(현수막 등) : 500,000원	= 3,000 = 1,000 = 7,040 = 500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 3,000원*880권	= 2,64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2)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 2026년 연수교육대상자 880명(예상)을 대상으로 김포시 관내에 장소를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 1회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연수교육 대상자(경기도산정) 500명 대비 2026년 연수교육 대상자는 880여 명으로 인원이 380여 명 증가하여 교육회차 및 교재 등 비용 증가로 인한 예산 요구액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08. : 2025년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 안내 문자 알림 및 교재 배부, 연수교육 사전접수
 - 2025. 09. 09. : 2025년 공인증개사 연수(집합)교육 시행
 - 2026. 01 ~ 12. :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연수(집합)교육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경기도 산정 500명(김포시 산정 372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2023.09.12. 연수(집합)교육 진행
2024	·경기도 산정 920명(김포시 산정 849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2024.06.25.~26. 연수교육 2회 진행
2025	·경기도 산정 500명(김포시 산정 372명) 대상으로 연수교육 안내 및 사전접수 진행 ·2025.09.09. 연수(집합)교육 진행

※ 관내 개업 및 소속공인증개사 1400여 명으로 2년에 1회 연수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468	5,428		40	
2024	11,104	9,417		1,687	
2025	6,925	6,197	-	7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행정9급 김한결	전화	2147
-----	-------	------------	-----	----------	----	------

부동산관련 민원처리 업무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3,000여건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2,880여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3,000여건,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3,100여건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5,000여건 -관용차량 운영 관리 1대		
사업목적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및 행정처분(과태료) 결과 등을 신속하게 우편 통지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위임규정	공인중개사 개설, 변경사항(사무소 이전 등),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 우편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078	39,636	41,636			-2,000	39,636	-	
국비									
도비									
시비	42,078	39,636	41,636			-2,000	39,636	-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636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2,900원×2,880건	= 8,352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2,900원×2,880건	= 8,3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2,900원×3,000건	= 8,700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10,082,000원	= 10,082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430×5,000건	= 2,150	
		-관용차량 유지비 : 2,000,000원×1대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각 팀별 민원 처리 우편요금 지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고정배차 공용차량 사용·소관 전환(2대->1대)로 차량 유지비 감액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12. : 우편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 통합 지출
- 2025. 01. ~ 12. : 우편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 통합 지출
- 2026. 01. ~ 12. : 우편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 통합 지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및 차량 유지관리비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2024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2025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지 우편발송 -부동산 중개업 및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우편발송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과통지 우편발송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발송(배달증명) -도로명주소 민원처리 우편발송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636	39,186		1,450	
2024	42,078	40,162		1,916	
2025	39,636	18,511		21,1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박민진	전화	2145
-----	-------	------------	-----	----------	----	------

배리어프리키오스크설치(번호표발행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키오스크(번호표발행기) 1대 설치		
사업목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이행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680	9,680		
국비									
도비									
시비						9,680	9,68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68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설치 (번호표발행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키오스크 설치 9,680,000원× 1대	= 9,680	

□ 예산요구 사유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이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6.1.28.부터 기존 기기를 포함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

□ 예산증감 사유

- 기존 토지정보과 내 순번발행기가 장애인이용에 적합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 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키오스크 구입 계약 체결
- 2026. 01. : 물품 납품 및 검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박민진	전화	2145
-----	-------	------------	-----	----------	----	------

안전전세 관리단 및 협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안전전세 관리단 및 협의회		
사업목적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및 협의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		제9조, 제13조
	제9조(안전전세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지사(시·군 포함)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②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제13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등록관청별(시·군)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600	1,600	
국비		0						0	
도비		0					160	160	
시비		0					1,440	1,4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	
안전전세 관리단 및 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 100,000원*2회*4명	= 800	
	202-02 국내여비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여비 : 20,000원*2회*20명	= 800	

□ 예산요구 사유

- 공인중개사 실천 참여를 통해 위험 중개행위 사전 차단 및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및 협의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25.8.12.조례 공표)에 의거 안전전세관리단 및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11. :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25. 01. ~ 02. :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
- 2026. 02. ~ 12. : 상·하반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회의 및 지도·점검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행정9급 김한결	전화	2147
-----	-------	------------	-----	----------	----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182,000여필지(김포시 전체 토지)			
사업목적	국제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산정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9,472	119,536	119,536	0	0	0	117,902	-1,634	
국비	34,539	33,503	33,503				33,620	117	
도비		0						0	
시비	84,933	86,033	86,033				84,282	-1,7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7,902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01-01 사무관리비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 101,385,000원 = 101,385 *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 제본 : 5,017,000원 = 5,017 - 프린터 토너 구입 : 1,000,000원 = 1,000 - 개별공시지가 홍보 4,000,000원 = 4,00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100,000원*11명*5회 = 5,500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검증대상 필지수 /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년도 표준지 수수료
	202-01 국내여비	-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 여비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과세자료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 등을 위한 제반 비용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포스터 등) 관련 예산은 시 재정여건 상 일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의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제반 준비	'25. 10. 16. ~ 11. 15.	'26. 6. 4. ~ 6. 24.
토지특성 조사	'25. 11. 20. ~ '26. 1. 17.	'26. 6. 25. ~ 7. 25.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6. 1. 20.	'26. 7. 28.
지가산정 및 검증	1. 24. ~ 2. 21.	7. 29. ~ 8. 1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21. ~ 4. 9.	9. 1. ~ 9. 22.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0. ~ 4. 17.	9. 23. ~ 10. 10.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4. 18. ~ 4. 28.	10. 13. ~ 10. 22.
지가결정·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	4. 30. ~ 5. 29.	10. 30. ~ 11. 28.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1. ~ 12. 19.
재결정·공시	6. 26.	12. 22.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8,706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833필)
2024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80,596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192필)
2025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79,108필),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997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841 (국:39,512 시:97,329)	134,628	-	2,213	
2024	119,472 (국:34,539 시:84,933)	108,424	-	11,048	
2025	119,536 (국:33,503 시:86,033)	114,112	-	5,42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권민성	담당자	시설7급 민성근 시설7급 안재현 행정8급 허서희 행정9급 오우리	전화	2160 2151 2154 2157
-----	-------	------------	-----	----------------------------------------------	----	------------------------------

도로명 주소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도로구간 3,504(종속도로 포함)		
사업목적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4조,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도로명주소 등)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6,287	254,591	255,251	0	-60	-600	222,793	-31,79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6,287	254,591	255,251		-60	-600	222,793	-31,79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2,793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명 업무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로터 롤용지 : 44,000원×15롤=660,0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 255,000원×3대×5회=3,825,000원 위원회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정보위원 수당 : 100,000원×9명×2회=1,800,000원 -지명위원 수당 : 100,000원×6명×2회=1,200,000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제작(리플릿, 홍보물품, 안내지도), 현장 홍보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번호판 13,500원×2,814=37,989,000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300,110원×100개=30,011,000원 	=	4,485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KAIS 단말기 유지비 : 40,000원×12월=480,000원 	=	480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정보시설 설치(확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55,000,000원 	=	55,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관별 부담금 26,600,000원	= 26,600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기관별 부담금 55,228,000원	= 55,228	

□ 예산요구 사유

- 시민 생활안전 및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증진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 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26. 1. ~ 2026. 2. : 2026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3. ~ 2026. 10. : 사업 집행(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등)
- 2026. 11. ~ 2026. 12. : 2026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명판 확충 - 267개(50,769천원) · 기초번호판 확충 - 152개(12,069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건물번호판) - 1,357개(17,418천원) · 상세주소 홍보 리플릿 - 7,000부(935천원) · 상세주소 홍보 배너 - 17개(1,309천원) ·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홍보 물품 제작 - 300개(1,650천원)
2024	· 도로명판 확충 - 159개(33,632천원) · 사물주소판 확충 - 382개(15,948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노후건물번호판) - 1,695개(23,712천원) · 상세주소 홍보 리플릿 - 6,000부(2,040천원) · 주소정보시설 홍보 물품 제작 - 1,627개(6,945천원)
2025	· 사물주소판 확충 - 480개(20,736천원) · 기초번호판 확충 - 31개(2,524천원) ·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 - 2개(190천원) ·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유지보수 - 83개(24,523천원) ·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노후건물번호판) - 1,600개(20,948천원) · 주소정보시설 홍보 물품 제작 - 4종, 어깨띠(9,99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4,313	243,661	-	652	
2024	256,287	254,379	-	1,908	
2025	254,591	215,865	-	38,7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7급 도미라	전화	2126
				시설8급 윤성근		2128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주소정보시설 약 53,236개(건물번호판 외 4종)		
사업목적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주소정보시설 오류에 따른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2,356	88,222	100,244	0	-12,022	104,393	16,17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356	88,222	100,244		-12,022	104,393	16,17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4,393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건물번호판: 41,860개×1,300원 = 54,418,000원 = 54,418 - 도로명판: 7,600개×2,500원 = 19,000,000원 = 19,000 - 기초번호판: 1,930개×2,100원 = 4,053,000원 = 4,053 - 사물주소판: 1,860개×2,100원 = 3,906,000원 = 3,906 - 주소정보안내판: 5개×2,800원 = 14,000원 = 14 - 일반관리비6%, 이윤10%, 부가가치세10% = 23,001,100원 = 23,002		

□ 예산요구 사유

- 주소정보시설 DB 정비를 통한 도로명주소 사용 시민 생활 편의 제공
- 스마트 KAIS로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판(예정), 기초번호판(예정), 사물주소판(479개) 확충에 따른 수량 증가로 2025. 12. 31.까지 주소정보시설 수량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수량 51,347개보다 1,908개 증가한 53,255개 예측으로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2026. 3. : 2026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6. 4. ~ 2026. 9. : 사업 집행(용역)
- 2026. 10. ~ 2026. 11. : 2026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47,623개(69,164천원)
2024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29,780개(45,658천원) ※2024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격년제(읍·면/동) 실시에 따른 수량 감소.
2025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51,347개(88,22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868	69,164	-	11,704	
2024	52,356	45,658		6,698	
2025	88,222	88,222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7급 도미라 시설8급 윤성근	전화	2126 2128
-----	-------	------------	-----	----------------------	----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국가지점번호 60점		
사업목적	국가지점번호 표기 오류 및 중복 설치 등 각종 오류 사례 발생에 따라 일제조사 실시로 정확한 위치 찾기 실현하여 시민 안전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명주소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774	5,621	5,621	0	0	0	3,388	-2,233	
국비		0						0	
도비	1,433	0						0	
시비	3,341	5,621	5,621				3,388	-2,23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88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1개당 일제조사 비용: 70,000원×32점=2,240,000원(평지) = 2,240 - 1개당 일제조사 비용: 105,000원×8점=840,000원(산지·해양) = 840 - 부가가치세10%: 308,000원 = 308 		

□ 예산요구 사유

- 국가지점번호의 정확한 표기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과 정확한 위치 찾기로 시민 안전보호

□ 예산증감 사유

- 현장에서 위치측량을 통한 국가지점번호 표기 오류 및 훼손등 점검, 관내 국가지점번호 206점을 4차로 나눠서 매년 순차점검 실시
- 2025년도에는 국가지점번호판 58점을 점검(5,621천원)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2022년도 점검분(40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 수수료

(단위: 원)

구분	GNSS측량 조사
평지	70,000
산지	105,000

※ 경기도 토지정보과-20119(2024. 8. 7.)호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수수료 변경에 따라 수수료 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2026. 3. : 2026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6. 4. ~ 2026. 8. : 사업 집행(용역)
- 2026. 9. ~ 2026. 11. : 2026년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최근 4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4년 추진실적

2022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40점(2,556천원)
2023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46점(3,295천원)
2024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60점(4,774천원)
2025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 58점(5,621천원)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73	3,295	-	678	
2024	4,774	4,774	-	-	
2025	5,621	5,621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7급 도미라	전화	2126
				시설8급 윤성근		2128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마송리, 상마리, 군하리
사업규모	3개 지구 647필지 479,811㎡(마송2지구 285필지 196,672㎡ / 상마지구 193필지 156,498㎡/ 군하지구 169필지 126,641㎡)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620	38,000	46,700	0	0	-8,700	41,700	3,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620	38,000	46,700			-8,700	41,700	3,7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1,700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7명×4회 = 2,800,000원 ·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6명×4회 = 2,400,000원 · 위원회 자료 및 상황판 제작 : 250,000원×6개 = 1,500,000원 · 지적재조사 지구계분할 수수료 : 5,000,000원 ·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 15,000,000원 ·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용역비 : 15,000,000원 	= 41,7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관련 비용,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사업 완료 후 지적도가 변경됨에 따른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수수료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임.

□ 예산증감 사유

- 지적재조사 지구별 지구계 분할필지가 상이하여 지구계 분할 수수료 감소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5. 11. ~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6. 1. :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현황측량 실시
- 2026. 2.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6. 3. ~ 2026. 7.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6. 8. ~ 2026. 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6. 10. ~ 2026. 11.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6. 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7. 1. ~ 2027. 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7. 2. ~ : 조정금 지급·징수
- 2027. 11. : 조정금 공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태리지구』 :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7필지 99,763.4㎡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18. 『후평2지구』 :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81필지 146,007.0㎡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대명지구』 :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85필지 257,065.3㎡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2024	『원산지구』 :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10필지 158,01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고막2지구』 :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2필지 116,22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유현지구』 :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5필지 99,787.9㎡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마송지구』 :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9필지 32,681.7㎡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2025	『태리2지구』 : 고촌읍 태리 969-1번지 일원 279필지 70,994㎡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3.(예정) 『초원지구』 : 대곶면 초원리 617번지 일원 136필지 129,273㎡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3.(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9,620	289,205	0	415	
2024	34,620	34,023	0	597	
2025	38,000	35,027	0	2,97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3개 지구 647필지 479,811㎡	본예산 요구액 (천원)	41,700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사업위치	마송리, 상마리, 군하리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12. 31.	사업위치	고촌읍 태리, 대곶면 초원지리
사업규모	2개 지구 415필지 200,267㎡(태리2지구 279필지 70,994㎡, 초원지구 136필지 129,273㎡)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35,000	1,730,000	1,730,000	0	0	0	1,200,000	-5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35,000	1,730,000	1,730,000	0	0	0	1,200,000	-5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0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01-12 기타보상금	· 태리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257㎡ 면적감소) · 초원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대상(934㎡ 면적감소)	= 355,000 = 845,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은 면적이 감소 된 토지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완료 단계에서 필수적인 예산임.

□ 예산증감 사유

- 지적재조사 지구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이 지구별로 상이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실시계획 수립
- 2024. 11. ~ 2025. 1. :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
- 2025. 2. : 지적재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관 계약 체결
- 2025. 3. ~ 8.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및 사업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 2025. 8. ~ 9.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5. 10. ~ 12.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6. 1. ~ 3.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및 이의신청
- 2026. 3.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등
- 2026. 3. ~ 4. : 감정평가 실시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조정금 산정
- 2026. 5. ~ : 조정금 지급·징수
- 2026. 11. : 조정금 공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후평지구』 : 하성면 후평리 일원 334필지 154,102.1㎡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 『용강지구』 : 월곶면 용강리 일원 207필지, 152,337.5㎡ / 사업기간 : 2021.11 ~ 2023. 2. 16.
2023	『태리지구』 :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7필지 99,763.4㎡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18. 『후평2지구』 :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81필지 146,007.0㎡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대명지구』 :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85필지 257,065.3㎡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2024	『원산지구』 :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10필지 158,01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고막2지구』 :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2필지 116,22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유현지구』 :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5필지 99,787.9㎡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마송지구』 :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9필지 32,681.7㎡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94,427 (2,200,000+394,427)	2,594,395	0	32	
2024	2,935,000	2,934,356	0	644	
2025	1,730,000	1,553,172	0	176,828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2개 지구 200,267㎡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업위치	태리2지구, 초원지구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50점(설치), 1,000점(현황조사)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임규정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53,310	50,000	0	0	3,310	54,500	1,19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53,310	50,000	0	0	3,310	54,500	1,19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500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401-01 시설비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 174,000원 × 250점 (지적재조사 지구 및 신설 포함)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 11,000원 × 1,000점	= 43,500 = 11,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 지역 경계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 지적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설치와 관리로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
-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함.

□ 예산증감 사유

- 수수료 상승에 대한 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1,522점(지적삼각보조점 208점, 지적도근점 1,314점) · 2023년 지적재조사 태리지구, 후평2지구, 대명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 192점 · 지적기준점 설치 : 78점
2024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1,008점(지적삼각점 8점, 지적도근점 1,000점) · 2024년 지적재조사 원산지구, 고막2지구, 유현지구, 마송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 196점 · 지적기준점 설치 : 323점 설치 완료
2025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 1,420점(지적도근점 1,420점) · 2025년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설치 : 80점 · 지적기준점 설치 : 200점 설치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54	47,449	0	5	
2024	50,000	49,701	0	299	
2025	53,310	53,225	0	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마송리, 상마리, 군하리 일원
사업규모	3개 지구 653필지 462,168㎡(마송2지구 285필지 181,255㎡, 상마지구 200필지 155,591㎡, 군하지구 168필지 125,322㎡)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2회추경 (C)			
계	146,998	86,422	84,451	1,971	142,273	57,822	
국비	146,998	86,422	84,451	1,971	142,273	57,822	
도비		0				0	
시비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2,273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01-01 사무관리비	◎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관측비 : 6,407,200원 ◎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 7,289,000원	= 13,697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적재조사사업 일필지 측량비 : 128,575,700원 (마송2지구 56,116,500원, 상마지구 39,380,000원, 군하지구 33,079,200원)	= 128,576	

□ 예산요구 사유

-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훼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 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필지 증가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산 증가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5. 11. ~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6. 1. :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현황측량 실시
- 2026. 2.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6. 3. ~ 2026. 7.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6. 8. ~ 2026. 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6. 10. ~ 2026. 11.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6. 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7. 1. ~ 2027. 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7. 2. ~ : 조정금 지급·징수
- 2027. 11. : 조정금 공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태리지구』 :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7필지 99,763.4㎡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18. 『후평2지구』 :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81필지 146,007.0㎡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대명지구』 :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85필지 257,065.3㎡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2024	『원산지구』 :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10필지 158,01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고막2지구』 :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2필지 116,22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유현지구』 :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5필지 99,787.9㎡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마송지구』 :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9필지 32,681.7㎡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2025	『태리2지구』 : 고촌읍 태리 969-1번지 일원 279필지 70,994㎡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3.(예정) 『초원지구』 : 대곶면 초원지리 617번지 일원 136필지 129,273㎡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3.(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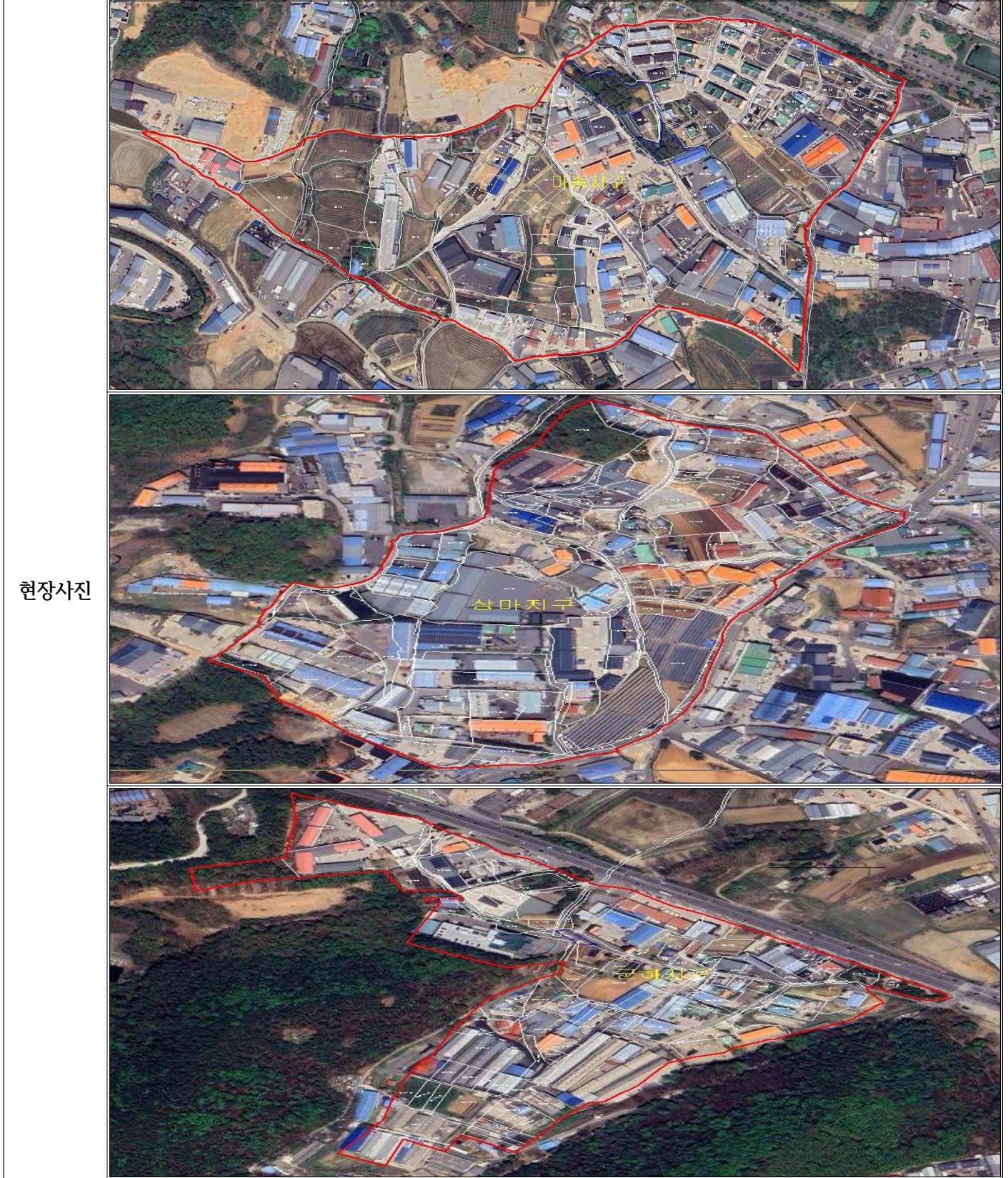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3,132	123,131		1	
2024	146,998	146,998		0	
2025	86,422	86,421		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3개 지구 필지 462,168㎡	본예산 요구액 (천원)	142,273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대곶면 상마리 일곶면 군하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7급 이기욱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대상지
사업규모	감정평가 160건, 검증 500건		
사업목적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및 거래가격신고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제1항, 제5항, 제7항 시행령 제10조의2, 제11조 제7항 제2호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를 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29,460	429,460	429,460	0	0	0	345,000	-84,4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29,460	429,460	429,460				345,000	-84,4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5,0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 1,000,000원(수수료) × 160(건수) × 2개 기관 ※ 평가 대상 토지별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 50,000원(단가) × 500(건) ※ 단가: 필지별금액, 여비, 부가세등을 고려하여 산출 	= 320,000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거래가격(토지 매입가)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지가 차익 만큼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임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경기침체 및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개발사업의 감소, 종료시점 감정가액 상향에 따라 공시지가 대비 매입가 및 처분가격의 실익이 줄어들어 거래가격 신고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거래가격신고 건수 및 대상 토지 감정 가액에 따라 집행 규모가 정해지는 예산인 만큼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26년도 상반기 거래가격신고 및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필요 시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12 : 납부의무자의 거래가격신고 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실시(수시)
- 2026년 총 4회(4월, 6월, 10월, 12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종료시점지가검증) 실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거래가격신고 149건, 감정평가 의뢰 298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536,055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20,847천원
2024	- 거래가격신고 213건, 감정평가 의뢰 426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1,007,589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19,962천원
2025	- 거래가격신고 34건, 감정평가 의뢰 74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104,255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11,96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6,903	556,902	-	1	
2024	1,029,460	1,027,551	-	1,909	
2025	429,460	116,217	-	313,24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전준규 시설8급 류예나 시설8급 우제훈 시설8급 김규현	전화	2155 2144 2152 2153
-----	-------	-------------	-----	----------------------------------------------	----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사업규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약 259건		
사업목적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게 환수하기 위한 개발비용 재검토 용역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법령 위임규정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3,100	233,100	233,100	0	0	0	233,1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3,100	233,100	233,100				233,1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3,100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900,000원 × 259건	= 233,10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토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재산정 용역을 통하여 정확한 공사 원가를 산출·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기관 입찰 의뢰 및 단가계약
- 2026. 2. ~ 2026. 12. :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수시)
- 2026. 3. ~ 2026. 12. : 재산정 완료 건에 대한 개발비용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92건(수행 완료) /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 대규모사업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1건(학운6산업단지) / (사)한양경제경영연구소
2024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95건(수행 완료) /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 대규모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1건(대포일반산업단지) / (재)대한산업경제연구소
2025	- 입찰에 따른 개발비용 단가계약 220건(수행 중) / (사)우리경제연구원, (사)세디경영연구소 - 대규모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1건(학운5 일반산업단지) / (사)한양경제경영연구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3,100	228,623	-	4,477	
2024	233,100	232,619	-	481	
2025	233,100	190,251	-	42,8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전준규 시설8급 류예나 시설8급 우제훈 시설8급 김규현	전화	2155 2144 2152 2153
-----	-------	-------------	-----	----------------------------------------------	----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체납정리위원회 2회, 공매대행수수료 5건		
사업목적	개발부담금 징수 및 체납 금액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7조 제10조 제19조 제103조
	위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를 준용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0	1,100	1,100	0	0	0	1,1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80	1,100	1,100				1,1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체납정리위원 수당 : 100,000원 × 3명 × 2회	= 600	
		· 공매대행수수료 : 100,000원 × 5건	= 50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비용 필요(체납정리위원회 수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부터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된 사항 반영하였으며, 그 외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8. : 제1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예정
- 2026. 10. : 제2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예정
- 2026. 1. ~ 2026. 12.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추진(필요 시 수시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운영비(우편료) : 10,982천원 - 체납정리위원회 수당 : 240천원
2024	- 제1회 체납정리위원회 개최(8. 28.) : 160천원 - 제2회 체납정리위원회 개최(10. 8.) : 120천원
2025	- 제1회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9. 5.) : 263천원 - 제2회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10.21) : 1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322	11,222	-	2,100	
2024	980	280	-	700	
2025	1,100	413	-	6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전준규 시설8급 류예나 시설8급 우제훈 시설8급 김규현	전화	2155 2144 2152 2153
-----	-------	-------------	-----	----------------------------------------------	----	------------------------------

반환금 기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대상지
사업규모	약 15건(환급 신청 예상 건수)		
사업목적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건에 대한 일부 환급을 통하여 세입 징수율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230	20,299	10,230	0	10,069	0	20,090	-20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230	20,299	10,230		10,069		20,090	-20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90	
반환금 기타	802 반환금기타	· 개발부담금 환급금 : 700,000,000원(조기납부 예상액) × 2.87% =	20,09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부담금 납부 의지 고취를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조기 납부 일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당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시 세외수입 징수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부터 조기 납부 환급금 산정 효율이 감소(3.41% → 2.87%)한 것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납부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조기납부 환급금 신청이 급증할 시 추경예산 편성 요구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12.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 신청 건 발생 시 환급 진행(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5건 2,167천원
2024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1건 10,042천원
2025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16건 18,40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	2,167	-	233	
2024	10,230	10,042	-	188	
2025	20,299	18,407	-	1,89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팀장 신현수	담당자	시설7급 전준규 시설8급 류예나 시설8급 우제훈 시설8급 김규현	전화	2155 2144 2152 2153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종합허가과



(종합허가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종합허가과
요구액	1,360,1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000,100	1,500,100	2,500,100	-1,000,000	1,000,100	-500,000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100	100	100	-	100	-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2,000,000	1,500,000	2,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농지전용 인허가 업무 건수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0,000	360,000	480,000	-120,000	360,000	-	
과태료 ◎기타과태료	80,000	60,000	80,000	-20,000	60,000	-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 건수 감소
부담금 ◎부담금	400,000	300,000	400,000	-100,000	300,000	-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 건수 감소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500건		
사업목적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으로 건축물 허가 시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추진에 따른 주민알림 사전예고 현수막 게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법	제27조 제1항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건축법	제27조 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축조례	제22조 제1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확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3,320	150,000	150,000	0	0	0	13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3,320	150,000	150,000				130,000	-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 210,000원*600건	= 126,000	
		· 건축법 관련 도서 구입 : 40,000원*25권	= 1,000	
		· 현수막 및 게시를 제작 : 30,000원*100개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법 제27조, 건축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 운영지침에 근거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고문 게시
 - 건축허가(신고) 전에 신청 현황을 건축예정지 내 게시(세부용도, 대지면적, 동수 등 현황 기재)

□ **예산증감 사유**

- 경제상황에 따른 건축사 활동 감소 예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현수막 구입(B1사이즈)
- 2026.03 : 수수료 지급(1분기)
- 2026.06 : 수수료 지급(2분기)
- 2026.09 : 수수료 지급(3분기)
- 2026.12 : 수수료 지급(4분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607건
2024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575건
2025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326건(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3,000	195,350		67,650	
2024	133,320	132,394		926	
2025	150,000	80,088	-	69,9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종합허가과	건축허가1팀장 육근성	담당자	시설7급 권지윤	전화	5852
-----	-------	-------------	-----	----------	----	------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 내
사업규모	정수기 임차료 및 음료수 구입 등		
사업목적	복합 인허가 민원 신청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	5,000	5,000	0	0	0	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	5,000	5,000				5,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민원 편의를 위한 사무 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차료 : 750,000원*2대	= 1,500	
		· 민원인 음료 구입 등 : 3,500,000원	= 3,500	

□ 예산요구 사유

- 인허가 민원실 사무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 증대
- 민원 편의 제공으로 시민의 인허가 편의성 극대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정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임차료 지급
- 2026. 1. ~ 12. : 민원실 음료수 구입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새울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6,010건 - 세움터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2,995건
2024	- 새울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5,957건 - 세움터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6,015건
2025	- 새울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4,520건 - 세움터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1,74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	4,999		1	
2024	5,000	5,000	-	0	
2025	5,000	4,557	-	44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최영조	담당자	행정7급 이종서	전화	5832
-----	-------	------------	-----	----------	----	------